존중.배려.협력으로 함께 성장하는 따뜻한 학교

2024학년도 교육활동 보호 추진 계획

마장중학교 교무기획부

추진 근거

- 「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
- 「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」
- ▶ 「2024 경기교육 기본계획 | 정책3-2, 교육활동 보호 강화
- 이천교육 기본계획

추진 목적

- 🚇 교권 확립과 스승 존경으로 교원의 자긍심 고취
- 🚇 교육활동 및 학습권 보호를 통한 학교 교육력 제고
- 🧶 교육활동 침해 교원에 대한 치유·회복·복귀 지원으로 안정적 교육환경 조성

비전 및 추진 체계

비전 목적

추진

전략

추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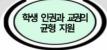
과제

교원이 존경받고 교육활동이 보호되는 행복한 학교

교권 존중 및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

학교 현장에 기반한 밀착 지원

예방 중심 교육 활동 보호 시스템



1.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운영 연계

- 1-1.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확대 설치
- 7개 센터 확대 설치
- ▶ 신설: 파주, 광주하남, 안 양과천, 평택, 시흥, 안산,
- 1-2.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
- 고양, 구리남양주, 성남, 수원, 용인, 화성오산, 파 주, 광주하남, 안양과천, 평택, 시흥, 안산, 부천

2. 학교 교육활동 보호 지원시스템 구축

- 2-1.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핫라인 1600-8787 홍보 및 운영 강화
- 2-2. SOS! 경기교육법률지원단을 통한 법률 지원 강화
- 2-3.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육감 의견서 제출
- 2-4.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내실화 지원
- 2-5. 교원 심리상담 치유 지원
- 2-6. 교원보호공제 가입 및 운영
- 2-7. 교육활동 보호 실태조사

3. 교권 존중 및 교육활동 보호 문화 조성

- 3-1. 교육활동 보호 예방 교육 실시
- 3-2. 교육활동 보호 자료 개발 및 홍보
- 3-3. 교육활동 보호 연수 운영
- 3-4. 학생 인권 및 교권의 균형을 위한 현장 공감 프로그램 운영
- 3-5. 화해중재단 연계 교육활동 침해 사안 분쟁 조정 강화
- 3-6.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환경
- 3-7.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예산 편성 안내

선생님이 행복할 때 학생도 행복한 학교생활을 통해 성장합니다

경기도교육청(교육활동보호센터)

- ○교육활동 보호 정책 기획 및 총괄
- ○교권보호지원센터 기획 및 운영 지원 ○경기교육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지원 ○교육활동 보호 조례 업무

- ○경기도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○상담심리 협력기관 지정 및 질 관리
- ○교육활동 보호 강사 구축 및 교육자료 개발
-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육감 의견서 제출

교육지원청 화해중재단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○학교 갈등 상황 (13개 센터) ○교육활동 보호 현장 조기 지원 고양, 구리남양주, 성남, 수원, 용인, 화성오산, 파주, 밀착형 지원 ○화해 중재 활동 광주하남, 안양과천, 평택, 시흥, 안산, 부천 ○ 지역교권보호위원회 ○관계 회복 지원 구성 및 운영 ○교육확동 침해 사안 지원 및 현장 지원팀 운영 ○학생생활지도 ○ 아동학대 신고 대응 ○교원 심리·정서 상담 지원 지원 교육활동 확인서 ○교원마음 회복 프로그램 운영 ○ 갈등 사안 교육적 제출 ○교육활동 보호 연수 운영 및 컨설팅 해결 지원

학교

- ○교직원·학생·학부모 대상 예방교육 실시
- ○학교 교육활동 보호 문화 조성
- ○학교 교육활동 침해 사안 대응
- ○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보호 조치
-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(3.27.까지)
- ○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요청(3.28.부터)

교육활동 보호 지원

1.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

- 가. 근거: 「교원지위법」제19조(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、운영)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(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)
- 나. 대상: 모든 교사
- 다. 구성: 7명
- 위원: 학부모위원(김○○, 위원장), 학부모위원(이○○), 학부모위원(정○○), 교감(박○○), \overline{a} 무기획부장(정 $\bigcirc\bigcirc$), 학생안전자치부장(이 $\bigcirc\bigcirc$), 학교전담경찰관(차 $\bigcirc\bigcirc$)
- 간사: 구다솜
- 라. 주요 심의 사항
-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
- 「교원지위법」제18조 제1항 각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
- 피해 교원의 보호 조치 심의,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등
- 그 밖에 학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

2. 교권보호책임관 및 업무담당자 지정

- 가. 목적: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보호 조치 부여 책무
- 나. 담당자 및 역할
- 교권보호책임관(박○○): 침해 사안 발생 시 갈등 중재 및 신속한 초기 대응
- 업무담당자(정○○): 사안 파악 및 피해 교원 보호를 위한 초기 대응

【교권보호책임관】

- ▶사안 인지 즉시 적극 개인으로 2차 피해 방지 시실이 왜곡와전되지 않도록 조치
- ▶학교 대응팀 구성 및 업무 담당자 창구 단일화로 학교 현장의 안정화 조치
- ▶응급 상황인 경우 119 신고 범죄 상황으로 판단되는 경우 112 신고
- ▶ 피해 교원 보호 조치 : 관련(침해)자와 분리, 상담 및 안전 조치(공무상 병가, 특별휴가 등)
- ▶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의 상담 및 심리 치료 지원 안내

【업무 담당자】

- ▶사안 내용, 시기, 관련자(학생인 경우) 등 조사 지원, 관련 학생 학부모 전화 연락 지원
- ▶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 조치 내용 및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절차 안내
- ▶ 피해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신고서 접수 후 48시간 내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발생 보고

3. 교육활동 침해 사안 대응 방안

- 가. 목적: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및 대응 강화로 책무성 강조
- 나. 금지: 교육활동 침해사안 축소 은폐 금지(징계 의결 요구)

[교원지위법 개정(2023.9.27.)] 제27조(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축소·은폐 금지 등)

-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하거나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.
- ② 교육감은 관할 구역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한 때에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소속 교원이 그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면서 축소 또는 은폐를 시도한 경우에는 「교육공무원법」 제50조 및 「사립학교법」 제6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.

[경기도교육청 조례 개정(2023.10.11.)] 제4조 제2항의 책무

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내용을 축소하거나 은폐해서는 아니 되며, 교육활동을 침해한 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피해 교원을 보호하고 치유와 회복에 필요 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4.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보고 및 지원[~24.3.27.]

- 가. 내용: 교육활동 침해사안 발생 및 결과 보고를 통한 신속한 현장 지원
- 나. 방법
-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서 접수 후 48시간 이내 보고(교육지원청, 센터)
-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종료 후 5일 이내 결과 보고서 보고(교육지원청, 센터)

V 교권 존중 및 교육활동 보호 문화 조성

1. 교직원·학생·학부모 대상 교육활동 보호 예방교육

- 가. 목적: 교육활동 침해 사전 예방 및 교권 존중 문화 조성
- 나. 대상: 교직원·학생·학부모
- 다. 대상별 교육 계획

대상	내용	일시	비고
교직원	- 교육활동 보호 연수 실시	2월 교육과정워크숍	
학생	- 교육활동 침해 행위 예방 교육	3.6.(수) 창체	
	- 교육활동 보호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활동	연중	자치회 연계
학부모	- 교육활동 보호 및 침해 이해 가정통신문 발송	3월 초	
	- 교육활동 보호 연수 실시	3.20.(수)	학부모총회

2. 학부모 소통 시스템 구축 및 운영

가. 목적: 학부모 소통 시스템 구축으로 교원의 교권 보호

나. 내용

- 사전 예약 없이 교육활동 중인 교사와 일차적 대면 방지
- 사전 예약을 통한 충실하고 준비된 전화 및 방문 상담 운영
- 학교 교육활동 개선을 위한 학부모 참여 통로 공식화

3. 교원의 개인 전화번호 공개 제한

가. 목적: 교원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교원 보호

나. 내용

- 교육활동과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의 개인 전화번호 전면 공개 제한
- 학부모 대상 연수 시 교원의 사생활 보호 및 교육활동 보호 중요성 강조
- 학부모 총회, 학부모 연수 자료를 활용하여 교사에게 개인 휴대전화로 연락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요청(기급 상황 시를 대비하여 학교 대표번호 등 안내)

4..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예산 편성

가. 목적: 학교 기본 운영비 항목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교원들의 안정적인 교육활동 지원 및 보호

나. 예산 내역

연번	세부 내역	비고
1	- 교권보호활동 강사비: 280,000원*1회 = 280,000원	
2	- 교권보호활동 협의회비: 12,000원*10명*2회 = 240,000원	

VI 기대 효과

- 🍑 교권 존중 및 교육활동 보호를 통한 상호존중 교육공동체 문화 조성
- 🍑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안정적 지원시스템 구축으로 학교 교육력 제고
- 🍑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현장 밀착 대응 및 지원으로 안전한 학교 문화 조성